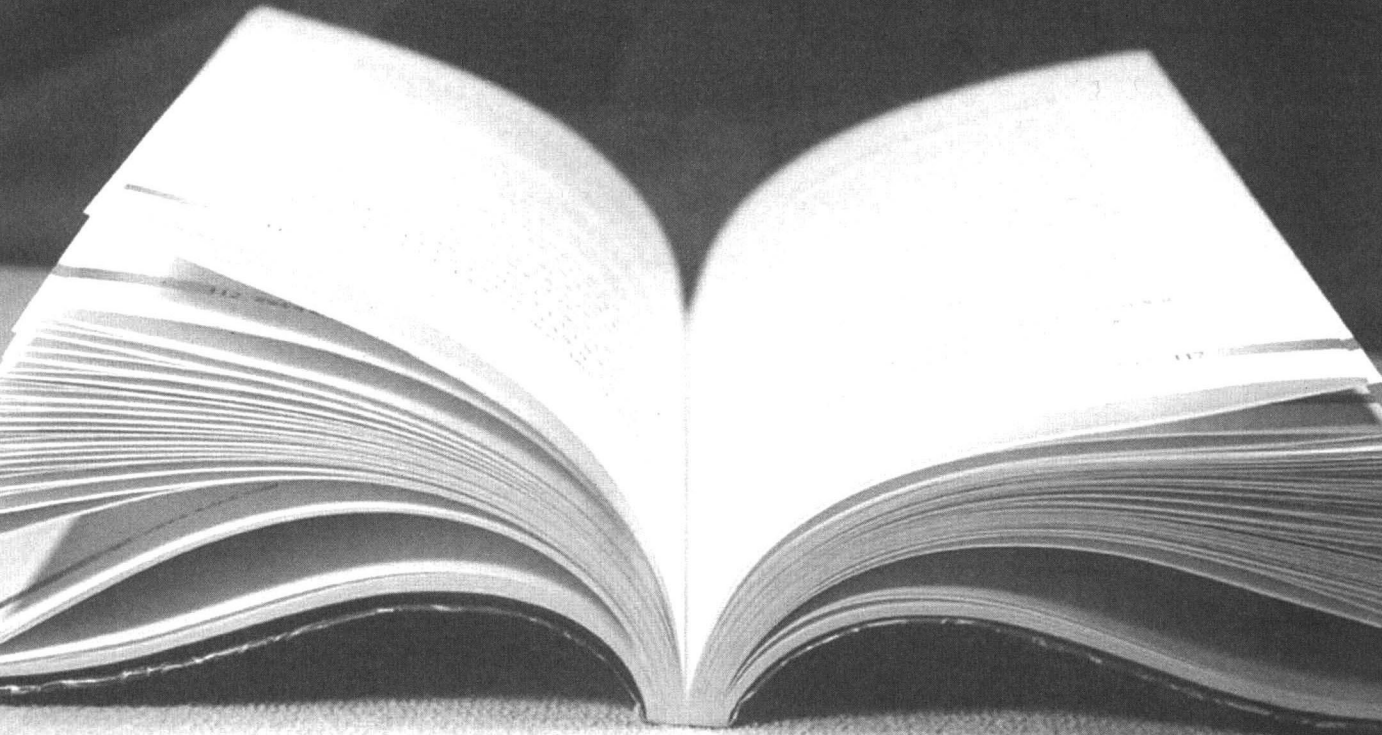


| 법규 및 정책동향 |

---

#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

---





## □ 개정 배경

○액법 시행규칙 개정(2006. 5. 3)으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 부착 의무화되고 과징금 산정기준이 현실화(매출액 대비 과징금 금액의 상향)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40호를 개정

## □ 주요 개정내용

-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 부착 의무화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제2조(적용대상) 제7호 신설 ]
- 액법 시행규칙 별표1의4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개정된 과징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부과토록 개정 [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개정 ]

## □ 그간 추진경과

- '02. 3. 22 : 행정처분기준 공고(산업자원부공고 제2002-44호)
- '03. 2. 15 : 행정처분기준 개정 · 공고(산업자원부공고 제2003-40호)  
-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용대상을 명확화
- '06. 5. 3 : 스티커 부착 의무화 및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시행규칙 개정)
- '06. 7. 25 :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 표시기준 공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35호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40호(2003. 2. 15)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공고합니다.

2006. 8. 4.  
산업자원부장관

##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40호(2003. 2. 15)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공고는 규칙 별표1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내지 6. (현행과 같음)
7. 규칙 별표 17 제2호바목(2)의 규정을 위반하여 용기가스소비자시설에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가스공급자의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에 자신의 스티커를 부착한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정지 또는 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가스공급자의 연간매출액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3만원	7만원	12만원	16만원
비 고				
1. 과징금산정기준의 일반기준은 규칙 별표 1의4 제1호에 의한다.				
2. 연간매출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가스공급자에 대한 과징금은 규칙 별표 1의4 제2호기목에 의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규칙 1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조7호의 규정의 스티커 부착 등의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